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11.

제 출 자 이희성 의원 배강민 의원

1. 제안이유

- 김포시의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혁신과 첨단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통합모빌리티 구축 및 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며 교통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1. . ~ 2025. 11. .
 - 나) 예고결과 :
 - 2) 부서협의
 - 가) 협의기간 : 2024. 11. . ~ 2025. 11. .
 - 나) 협의결과 :
 - 3)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미래전략과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모빌리티 기술의 도입 및 지원을 통해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와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모빌리티"란 김포시의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김포시민의 모빌리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개선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등 도입 및 운영

3. 첨단모빌리티 도입에 필요한 도로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유형·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빌리티 혁신”이란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설치·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제공·설치·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2. 지역별·교통축별·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